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 회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더라도 그 기업집단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,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회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28. ~ 2024. 2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”을 “제3항 및 제4항”으로, “지정된”을 “새로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 또는 제4항”을 “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”으로, “지정 제외하는”을 “변경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 제외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3항 및 제4항”을 “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

다.

1.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을 것

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

가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(국내 회사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를 말한다)가 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

나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

다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

라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8조(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, 비영리법인 또는 단 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자연인을 동일인으 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 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1.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경우와 국내 회사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</u>

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
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
경우의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
을 것

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
추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
한 이익제공 등의 우려가 없
다고 인정될 것

가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
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
사(국내 회사를 동일인으
로 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
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
단을 지정하는 경우에는
그 국내 회사를 제외한 국
내 계열회사를 말한다)가
발행하는 주식을 보유하고
있지 않을 것

나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
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
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
유하고 있지 않을 것

다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
는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
채직 등의 방법으로 국내
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제외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

고 있지 않을 것

라.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

⑤ ----- 제3항 및 제4항-----
----- 새로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된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-----
----- 변경 지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 제외하는 -----

-----.

⑦ -----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-----

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⑦ (생략)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 제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	----- -----.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 ⑨ ----- 제8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933